商標 使用秩序를 確立

特許廳 外國商標 盜用實態調査 結果

特許廳은 誤謬된 商標使用秩序를 確立하기 위해 올해에도 外國有名商標를 無斷製造하거나 이들 製品을 販賣하는 一切의 不當行爲를 根絶시키는 데 主眼을 두고 本會등 有關機關과 合同으로 지난 4月 14日부터 26日까지 2주일 동안 서울의 이태원등 全國 26個 主要都市의 市場·百貨店·관광호텔등에 있는 2천9백40個 業所를 대상으로 商標盜用 實態調査를 實施한 結果, 모두 4백83個 業所에서 1천3백25件에 걸쳐 外國有名商標를 無斷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關係당국에 告發 또는 警告措置를 내렸다고 한다.

이번에 摘發된 商標盜用 業所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서울地域이 2백59個業所 6백6件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釜山地域 49個 業所에 1백77件, 大邱地域이 35個 業所에 1백26件, 慶南地域이 20個 業所에 76件, 全南地域이 19個 業所에 66件의 順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外國商標盜用이 가장 심한 서울地域의 경우 百貨店 및 관광호텔등의 特殊地域에서 2백36件으로 가장 많이 盜用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南大門市場 및 平和市場등의 一般地域이 2백5件, 梨泰院地域이 1백65件의 順으로 밝혀졌다.

또 有名商標別로는 「필라」가 1백41件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플레이 보이」가 1백29件, 「나이키」가 1백2件, 「구찌」가 69件, 「피에르 가르댕」이 68件, 「아놀드파마」와 「이브쌩로랑」이 66件, 「라코스떼」가 64件, 「아식스」가 61件 順이다. 또 品目別로는 가짜 商品의 대부분이 衣類·가방·혁대·신발等으로 商標盜用行爲가 이들 商品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分析됐다.

特許廳은 이번 實態調査 및 團束結果 摘發된 業所 가운데 레이블 또는 模造商品을 製造했거나 模造商品을 專門的으로 販賣한 57個 業所를 사직당국에 告發措置하고, 나머지 4백26個 業所에 대해서는 각 市·道를 통해 1次 警告하되 다음번 團束時까지 是正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業所도 告發措置할 方針이라고 한다.

特許廳은 또 이와함께 앞으로 더 한층 團束을 强化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開催以前에 商標使用秩序를 確立하기로 했다. 돌이켜 보면 商標制度는 企業과 消費者間의 信賴關係를 바탕으로하여 公正한 去來秩序를 維持함으로서 企業을 發展시키는 同時에 消費者를 保護하는 데 큰 役割을 하여왔다.

따라서 商標制度는 一定商品에 對하여 獨占排他權과 함께 그 商品에 대한 他人의 使用을 不容하는 禁止權으로서 商標權이 그 根幹이 되며 法의 保護까지 받고있어 商去來秩序의 確立과

<우리나라 最初의 商標登錄證>

하자를 보고

申 東 植
〈本會 總務部長〉

商標를 통한 企業의 信用蓄積이 이루어져 消費者를 保護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商標는 國內外를 莫論하고 消費者에게 商品을 識別시키고 企業의 信用과 商品의 品質을 保護케하는 바로미터的 機能도 다함으로써 메이커나 販賣業者의 얼굴과도 같은 口實을 한다. 이와같이 商標의 機能이 우리 社會에 주는 比重이 큼에도 不拘하고 一部 企業에서는 아직까지도 他社와의 競爭에서 品質保障을 앞세운 商標管理에 力點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宣傳的 效果를 노린 商標管理를 해왔기 때문에 消費者들에게 自社商品을 深度있게 認識시키지 못하는등 올바른 商標制度의 活用이 未洽한 것도 事實이다. 더우기 一部 生産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關聯法規의 未熟知 및 認識不足등으로 登錄된 個人의 商標를 無斷으로 使用하여 商去來秩序를 紊亂시킬 뿐아니라 外國人의 著名商標를 주로 衣類·가방·혁대·신발등에 使用해서 消費者를 欺瞞하고 商標權者의 權利를 侵害함으로써 國際信義까지 失墜시키는 事例가 있음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도 外國의 有名 商標가 붙은 外製品이라면 價格과 品質에 相關없이 無條件 사려하는 우리나라 消費者들의 奢侈消費性向에도 問題가 없지는 않다. 따라서 企業人이나 販賣業者들은 此際에 自身의 社會的 位置나 責務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他人의 登錄商標를 正當하게 使用하여 商去來秩序를 바로 잡는데 적극 協調하지 않는한 消費者 保護의 길은 전혀 트이지 않는다는 事實을 銘心해야겠다.

또 自己商標가 아닌 他人의 商標를 使用하려 할때는 반드시 當事者나 特許廳의 모든 法的節次를 밟아야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므로써만이 商標使用秩序가 確立될 것이다. 〈㈜〉